3년의 혁신, 30년의 성장

2014년 8월 29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통신 · 방송 · 인터넷은 8월 28일(목) 16:00 이후 보도 가능
www.smba.go.kr
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보 도 자 료

성장징검다리 중소기업청 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• 문의 : 중기청 벤처정책과 이준희 과장(042-481-4383), 정연호 사무관(4494)

기술력 우수한 창업기업, 벤처기업 인증 쉬워진다

- 기술성 중심으로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선 -

□ 기술성이 우수한 창업기업의 벤처기업 확인이 수월해진다.

○ **중소기업청(청장 한정화)**은 창조경제 실현의 주역인 벤처기업을 선별하는 '벤처기업 확인제도'를 기술성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.

□ **'벤처기업 확인제도'**는 '97년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정 이후 지원 대상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**'98년 도입**되었으며

○ 현재는 기술평가 보증·대출 유형, 연구개발 유형, 벤처투자 유형 중 한 유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하고 있다.

< 현행 유형별 벤처확인 요건 >

유형	확인요건	확인기관
기술평가 보증·대출	① 기보·중진공의 기술 평가를 통해 보증 또는 대출이 **가능한 금액**이 8천만원 이상 ② 벤처확인평가에서 총점 65점(만점 100점) 이상, 기술성부문 26점(만점 43점) 이상	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
연구개발	①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② 연구개발비가 업종별로 총매출액의 5~10% 이상 ③ 사업성 평가 우수(60점 이상/ 100점 만점)	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
벤처투자	① 창투사 등으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 유치 ② 투자유치 금액이 자본금의 10% 이상	한국벤처캐피탈협회

□ 이번 개선방안은 기술성이 우수한 창업기업 및 혁신역량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이 벤처에 진입하여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벤처확인제도에 대해 그간 벤처업계 등에서 제기한 개선 의견 등을 반영하여 마련하게 되었다.

□ 이번 '벤처확인제도 개선방안'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보증 · 대출 유형

□ 먼저 보증대출 유형의 벤처확인 평가 항목중 창업초기기업이 충족하기 곤란한 **재무능력을 평가하는 3개 항목*을 폐지**했다.

* 자금조달능력(7점), 매출액 순이익률(5점), 투자대비 회수 가능성(5점)

○ 또한 현행 평가항목별 혁신성 측정의 **우선순위를 재검토**하여 **핵심지표의 배점은 상향 조정**하고 **비핵심 지표의 배점은 하향 조정하였으며,**

< 평가지표별 배점 변경 현황>

핵심지표 배점 상향			핵심지표 배점 하향		
지표명	현행	개선	지표명	현행	개선
개발전담조직	5	7(+2)	생산시설확보수준	5	3(-2)
개발인력 비율	5	7(+2)	생산인력확보수준	4	3(-1)
기술개발 실적	5	7(+2)	제품의 인지도	7	4(-3)
지식재산권 보유현황	5	7(+2)	대체품과의 비교우위성	7	6(-1)

○ 기술성 중심의 평가를 위해 **기술의 우수성 항목의 배점을 대폭 확대**(7점→18점)하고,

○ **해외 시장진출 역량을 갖춘 기업이 평가에 유리하도록 '글로벌 시장 진출가능성 항목'**(5점)**을 신설**하였다.

○ 이에 따라 평가항목중 **기술성 분야의 총 배점이 당초 43점에서 52점으로 9점 증가**하였다.**(별첨1 참고)**

연구개발 유형

□ 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R&D 투자 비율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나, 현행 연구개발 유형의 **매출액 대비 R&D 투자비율** 요건은 **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업종별로만 차등적인 기준을 적용**하고 있다.

○ 이에 벤처기업의 R&D 투자현황을 분석하여 **R&D 투자비율 기준을 매출액 구간별**(50억 미만, 50억~100억, 100억 이상)로 1~2%p 완화하였다. **(별첨2 참조)**

* (예시) 의료·정밀·광학 : (현행) 8% → (개선) 50억 미만(8%), 50억~100억(7%), 100억이상(6%)

□ 또한 사업성 평가 항목 중 **경영주 평가 및 재무성 평가 항목을 폐지**하고 순수 사업성 평가 위주로 간소화하여 기업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였다.**(별첨3참조)**

* **(현행)** 경영주 평가(4개), 사업성(4개), 재무성(2개) → **(개선)** 사업성(4개 항목)

벤처투자 유형

□ 투자 유형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투자기관*으로부터 5천만원 이상(자본금의 10% 이상) 투자를 받아야 한다.

* 벤처투자기관 : 창투사(조합),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투자조합, 한국벤처투자조합, 산업은행, 기업은행, 일반은행, 개인투자조합, 사모투자전문회사 등

○ 앞으로는 벤처경험을 통해 우수기업을 선별하는 능력을 갖춘 **전문 엔젤*투자자도 벤처투자기관에 포함하고**

* 투자실적(1억원 이상) 및 경력(벤처투자기관 2년 이상 근무 등) 등을 충족하는 엔젤투자자

○ **해외 벤처캐피탈(VC)로부터 사업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기업**도 국내 벤처캐피탈(VC) 투자 기업과 같이 벤처확인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.

□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"이번 벤처확인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보다 수월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,

○ 벤처기업에 부여되는 세제, 입지, 자금 등 정부의 벤처지원 혜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"고 전했다.

□ 또한 "이번 개선방안과 관련된 규정의 개정 작업을 올해 안에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, 변경된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"이라고 밝혔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정연호 사무관(☎ 042-481-449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참고> 현행 벤처확인 요건과 개선안 비교

유형	현행 요건	개선안
보증 대출	○ 기보 보증·중진공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서, 총자산액 대비 5% 이상 * 창업 1년 이내 기업은 4천만원 이상, 총자산 비율 적용 제외	○ 좌동
	○ 기술성평가에서 총점 65점/100점 이상, 기술성부문 26점/43점* 이상 * 43점의 60% = 26점	○ 기술성평가에서 총점 65점/100점 이상 **기술성부문 31점/52점* 이상 (별첨 1참조)** *** 52점의 60% = 31점**
연구 개발	○ 기업부설연구소 보유	○ 좌동
	○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&총매출액의 5~10%이상 *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	○ 좌동**(업종별·매출액 규모별 연구개발비 비율 개선안은 별첨 2 참조)**
	○ 사업성평가 우수(10개 항목, 60점 이상/100점 만점)	○ 사업성평가 우수(**4개 항목**, 60점 이상/100점 만점, **별첨 3 참조)**
벤처 투자	○ 벤처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% 이상 & 5천만원 이상 투자 * 창투사(조합),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투자조합, 한국벤처투자조합, 산업은행, 기업은행, 일반은행, 개인투자조합, 사모투자전문회사	○ 좌동 * 창투사(조합),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투자조합, 한국벤처투자조합, 산업은행, 기업은행, 일반은행, 개인투자조합, 사모투자전문회사, **전문엔젤, 해외VC (추가)**

별첨1 보증·대출 유형 평가항목 개선안

평가유형	평가항목	현행 배점	개선안
경영주 기술능력 항목 (25점)	기술지식 수준 등	25	25
기술성 항목 (43점)	개발전담조직	5	7(+2)
	개발인력 비율	5	7(+2)
	기술개발 실적	5	7(+2)
	지식재산권 등 보유현황	5	7(+2)
	기술의 우수성	7	기술의 선도성(6) 기술의 완성도(6) 기술의 확장성(6) 18 (+11)
	생산시설확보수준	5	3(-2)
	생산인력확보수준	4	3(-1)
	자금조달능력	7	0(폐지, -7)
소 계		43	52(+9)
사업성 항목 (32점)	제품의 인지도	7	4(-3)
	대체품과의 비교우위성	7	6(-1)
	판매계획의 타당성	4	4
	국내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	4	4
	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	-	5(신설, +5)
	매출액 순이익률	5	0(폐지, -5)
	투자대비 회수가능성	5	0(폐지, -5)
소 계		32	23(-9)
합 계		100	100

※ 기술성 항목 최소점수 기준 변화

(현행) 43점 중 26점이상 → (개선) 52점 중 31점 이상 (5점↑)

별첨2 연구개발 유형 R&D 투자비율 개선안

업 종	현행 기준(%)	개선안 (50억원 미만은 현행 유지)	
		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	100억원 이상
① 의약품 제조	6	6	6
② 기계 및 장비제조	7	5(-2)	5(-2)
③ 컴퓨터및주변장치	6	6	5(-1)
④ 사무용기계및장비	6	6	5(-1)
⑤ 전기장비	6	5(-1)	5(-1)
⑥ 반도체 및 전자부품	6	5(-1)	5(-1)
⑦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	8	7(-1)	6(-2)
⑧ 기타제조업	5	5	5
⑨ 도매 및 소매업	5	5	5
⑩ 통신업	7	5(-2)	5(-2)
⑪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	10	8(-2)	8(-2)
⑫ 컴퓨터프로그래밍, 시스템통합관리업	10	8(-2)	8(-2)
⑬ 정보서비스업	10	8(-2)	8(-2)
⑭ 기타산업	5	5	5

별첨3 연구개발 유형 사업성 평가 항목 개선안

구분	평가항목	심사항목	현행	개선안
경영주 기술능력	기술지식 수준 및 경험수준	기술지식수준	10	폐지
		기술경험수준	16	
	경영능력	기술인력관리	9	
		경영의지 및 사업수완	9	
소계			44	
사업성	신청기술(제품)의 경쟁력	인지도	12	30
		타제품과의 비교우위성	12	30
	사업계획의 타당성	판매계획의 타당성	7	20
		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	7	20
	수익전망	매출액경상이익율	9	폐지
		투자대비 회수가능성	9	
소계			56	100
합계			100	100